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강 희 수*

목 차

- I. 서 론
- II. 규모와 유효세율에 관한 기존연구
- III. 변수의 정의 및 연구가설의 설정
- IV. 실증분석 및 결과
- V. 요약 및 결론

I. 서 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반확충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외에도 중소기업이 지역에 매우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금융지원, 조세지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사업 영역 보호 등 다양한 수단을 들 수 있다. 이 중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조세지원 수단을 개발한다거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조세부담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인데, 현재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되고 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세지원방식은 준비금제도, 특별상각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중소기업법인을 대상으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실질부담 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정치적 비용이 규모의 비례함수이며 정치적 비용은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예: 짐머만 1983, 조성표 1990, 심우왕 1991). 그런데 규모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그리고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 즉 매출액 및 자본금의 크기에 따른 소득금액 및 유효세율을 측정한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둘째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법인세 절세를 위한 직접지원방식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제도 활용이 유효법인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II. 규모와 유효세율에 관한 기존연구

규모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그리고 유효세율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규모와 유효세율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기존연구들은 기업의 규모와 정치적 비용¹⁾ 그리고 유효세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짐머만(Zimmerman 1983)은 유효법인세율을 정치적 비용의 한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이를 규모변수의 정치적 비용에 대한 대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이용한 바 있다. 짐머만의 연구에서 대규모 기업이 소규모기업 보다 정치적으로 더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그 결과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것이라는 규모가설의 전체를 실증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 부담율은 60년대까지는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 70년대에 들어와 대기업군이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주로 석유산업과 비내구재 제조업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군의 많은 부분이 석유회사들이어서 이들이 전체 결과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신운수업과 도소매업의 경우는 반대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대기업이 오히려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싱우왕(Shing-Wu Wang 1991)은 규모와 유효세율 그리고 규모와 정치적 비용,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치적 비용은 유효세율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이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며, 규모와 유효세율과의 관계도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성표(1990)는 우리 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모든 기업을 대기업과 기타기업으로 분류한 후 대기업군이 기타 기업군에 비해 법인세부담율이 낮은 원인을 규모의 비경제와 세제상 혜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규모의 비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법인세공제전이익/매출총이익의 비율로, 다음으로 대기업군이 기타기업군에 비하여 세제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법인세등/법인세공제전이익의 공식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1) 기업과 정부사이의 정치과정에서는 반트러스트 규제, 정부와의 계약 및 보조금, 수입물량할당, 보호관세, 명시적 조세 및 암묵적 조세 등 여러가지 형태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회계문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칭하여 정치적 비용/효익(political costs/benefits)이라고 한다.

Ⅲ. 변수의 정의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변수의 정의

1) 중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도매업, 소매업,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인 경우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인 경우는 2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크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은 주주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사용인만을 말하며, 종업원수는 매월 말일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해 과세년도 중 어느 한달이라도 기준인원수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월중의 인원수는 기준인원을 초과하여도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규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업용 자산가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 금액을 의미한다. 세무조정 내용은 기업회계상의 이익과 세법상의 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행 세법을 중심으로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정책적 입장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세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혹은 불리한 부담이다. 세법상 혜택이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준비금의 손금인정이다. 이와 반대로 세법상 불리한 부담이란 특정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인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벌금 등의 손금불산입, 국가기부금 등 접대비에 대하여는 일정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업회계기준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익에 대하여는 실현주의를, 비용에 대하여는 발생주의를 각각 채택하고 있으나,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실질적 개념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은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자본적 지출에 상당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의 경우도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자산수증이익을 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상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익금에 산입할 뿐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상당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의 경우도 익금에 산입하고, 다만,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일시상각충당금설정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 법인과 출자자와의 거래 및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있다.

이러한 차이 이외에도 부동산임대업의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상,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의 손금부인,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지출의 손금제한 및 자산, 부채의 현재가치평가에 의한 차이가 있다.

3) 총부담세액

총부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결산상 당기순이익			
±	무	조	정
소	득	금	액
-	이	월	결
-	비	과	세
-	소	득	공
-	소	득	공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공	제	·
-	가	산	세
+	가	산	세
총	부	담	세
			액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4) 유효법인세율

일반적으로 유효법인세율은 부담세액을 영업현금흐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영업현금흐름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는데²⁾ 본연구에서는 소득금액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text{유효법인세율} = \text{총법인세부담액} / \text{소득금액}$$

5) 법인세율

90년도 법인세법상의 세율구조는 2단계 초과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8,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는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2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8,000만원 이하로 하여 소득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6) 조세지원제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³⁾에는 법인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방식으로서 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방식은 서로 다른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이 중 준비금과 특별상각은 법인세의 납부지연에서 오는 유리한 현금흐름으로 인한 간접적인 지원혜택이 있는 반면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영구적인 법인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직접지원 혜택이 있다.

(1) 직접지원제도

가.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이 각 사년도의 소득을 초과할 때에 절세효과가 있으며 절세효과와 계산은 소득공제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 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준비금·특별상각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

2) 짐머만(Zimmerman 1983)은 매출총이익율, Shing-wu Wang(1991)은 경제적 소득(Economic income), 매출총이익, 회계적 이익(Accounting income)을 그리고 조성표(1990)는 매출총이익으로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한 바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은 1967년 이래 경제개발계획을 세계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개정되면서 시행되어 왔으며, 198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을 계기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한편 1991년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도록 하고 있었던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은 1996년 말까지 5년간 다시 연장하였다. 조세감면제도에 의한 국세감면액은 1985년에 1조 668억원에 달하였다.

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2%를 곱하여 계산한세액 중 많은 것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저한세제도).

내국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조감법 제91조 제1항).

현행 소득공제는 모두 조세감면규제법에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중자소득공제, 기술소득공제, 기술용역사업등 소득공제, 해외사업소득공제, 축산업소득공제가 있다.

나. 세액공제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세액이 된다.

현행 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제도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제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 제24의3)와 재해손실세액공제(법법25)로 구분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로는 중소기업투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신기술기업화 사업,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시설,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지방이전사업, 법인본사 지방이전, 산업합리화에 따른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 특정설비투자, 의료기기투자, 임시투자, 사원용임대주택, 기숙사투자, 보육시설투자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또한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서로 다른 한계적용세율에 처하게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액공제는 당해년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과 당해년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것이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최저한세(조감법88조)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감법제89조제1항).

따라서 이월공제의 문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2) 간접지원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간접지원제도로는 준비금과 특별상각제도가 있다.

가. 준비금

세법상 준비금이란 당해 사업년도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특정사업에 대하여 장차 발생할 비용이나 또는 시설개체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환입하거나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게 하는 세법상의 손금이다. 준비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등의 직접지원제도와는 달리 특별상각과 더불어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여 주는 간접지원제도이다. 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인한 세금혜택의 크기는 조기에 손금화되는 금액에다 손금산입시의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과 이러한 손금의 조기인정이 없었다면 추후에 손금이 될 금액에 그 시점에 있어서의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과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평가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다양한 준비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중소기업투자, 기술개발, 수출손실, 해외시장개척, 해외사업손실, 해외투자손실, 광업투자,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투자, 지방이전, 법인본사지방이전, 지방대기업, 투융자손실, 대전박람회참가준비금 등이다.

나. 특별상각

손금으로 조기에 산입해 주는 세금혜택 가운데 하나가 특별상각제도이다. 이 경우 절세효과를 조기상각되는 금액에 한계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특별상각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대신에 감가상각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후기에는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특별상각의 세금혜택도 결국은 조기손금화에 따르는 법인세 납부 지연의 효과로 인한 화폐의 시간가치가 되는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별상각은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수출사업, 외국항행사업, 광업,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지방이전사업,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 특정설비투자, 의료기기투자, 주차시설, 경기조절용투자, 임대사업용 국민주택, 종업원기숙사에 대한 특별상각들이 있다.

2. 연구가설의 설정

여기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이론 및 실증결과 그리고 앞서 검토한 조세지원제도를 감안하여 법인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을 잘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가설3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법인세 부담이 많아지므로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소득금액, 총부담법인세가 많을 것이다.

즉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상대적으로 소득금액 및 총부담법인세가 많아질 것이다.

가설2 : 규모는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할 것이며 그 결과 유효세율은 낮아질 것이다.

IV. 실증분석 및 결과

1. 분석대상 자료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1990년 법인세 신고서 중소기업기준점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제주지역 소재의 중소기업대상법인 131개사 가운데 1990년도에 법인세 납부납부 실적이 있는 102개사로서 이 중 소매업 5개사를 제외한 9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업종별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법인

업 종	중소기업대상법인수	법인세납부실적이있는법인수	분석대상법인수
제조업(M)	27	18	18
건설업(C)	40	31	31
운수업(T)	40	32	32
도매업(W)	19	16	16
소매업	5	5	-
계	131	102	9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대상자료의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부록에 나타나 있다. 부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효세율이 20% 미만인 법인과 소득금액이 8,000만원 초과 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유효세율이 낮은 법인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 실질부담법인세율이 낮은 법인들이다.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이용실태를 지원제도별로 살펴보면 간접지원방식인 준비금제도, 특별상각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법인은 25개, 그리고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법인은 3개사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이용도가 부진하였다. 제주지역중소기업법인이 간접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금 또는 특별상각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 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준비금 및 특별상각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 준비금 또는 특별상각의 설정방법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점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1) 증자소득공제제도 활용법인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 가운데 1990년도 증자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한 법인은 제조업이 7개사,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건설업이 5개사, 운수업이 13개사, 도매업이 3개사이며 각 법인별 증자소득금액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증자소득공제제도 활용법인별 증자금액

(단위 : 1,000원)

제 조 업		건 설 업		운 수 업		도 매 업	
M-4	3,750	C-3	72,000	T-1	2,160	W-3	510
M-7	9,450	C-4	18,000	T-5	10,180	W-5	9,000
M-8	12,750	C-16	8,970	T-6	6,600	W-6	2,400
M-9	7,800	C-25	18,000	T-9	3,000		
M-10	9,750	C-29	10,500	T-10	8,250		
M-11	43,500			T-12	20,160		
M-12	63,000			T-14	10,080		
				T-15	3,636		
				T-16	14,040		
				T-18	5,400		
				T-20	375		
				T-30	12,015		
					12,015		
150,000		127,470		104,121		11,901	

(2) 세액공제제도 활용법인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 가운데 1990년도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한 법인은 3개 법인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2개법인과 기술개발투자세액공제 1개법인에 불과하며 그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세액공제제도 활용법인별 공제세액 내역

(단위 : 1,000원)

	M-10	M-11	M-21
소득금액	92,188	480,658	2,186,126
- 소득공제	9,750	43,500	-
과세표준	82,438	437,158	2,186,126
* 세 율	20%, 30%	20%, 30%	20%, 30%
산출세액	16,731	123,147	647,838
- 세액공제	5,019*	34,844*	2,401**
총부담세액	11,712	88,303	645,438

*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술개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현행의 세액공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액공제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점이 주요 활용부진 이유로 볼 수가 있다.

2. 실증분석결과

1) 가설1에 대한 검증

(1) 업종별 평균

(표 4)는 각 변수의 평균을 기업업종별로 구분하여 요약한 것이다.

(표 4) 업종별 평균(1990)

(단위 : 1,000원)

업종	법인수	자본금	매출액	소득금액	법인세부담액	유효세율
제조업(M)	18	₩261,966	₩3,235,762	₩122,040	₩226,386	0.2077
건설업(C)	31	676,764	6,347,012	332,852	106,506	0.2815
운수업(T)	32	190,013	1,099,912	72,448	16,890	0.1812
도매업(W)	16	89,600	3,862,708	96,014	23,491	0.2081
계	97	344,995	3,626,447	169,517	48,641	0.2226

(2) 자본금규모와 소득금액·총부담세액·유효세율

1990년도 자본금과 매출액을 각 업종별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양등분한 다음, 자본금이 소규모인 기업 49개사와 대규모인 기업 48개사 간에 소득금액·총부담세액·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t검정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자본금 규모와 소득금액·총부담법인세·유효세율과의 관계

	자본금小	자본금大	T 통계량(p) 값	유의수준
소득금액	62,692천원	275,413천원	-2.73	0.009
총부담세액	13,531천원	83,599천원	-2.88	0.006
유효세율	0.188	0.237	-2.04	0.045

(표 5)에서 보면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이 소득금액, 총부담세액, 유효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집단간의 평균치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본금규모에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따른 소득금액, 총부담세액의 차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금규모별 유효세율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본금규모와 소득수준, 총부담세액, 유효세율은 상당한 상관성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3) 매출액규모와 소득금액·총부담법인세·유효세율과의 관계

(표 6)에서는 매출액규모에 따른 소득금액·총부담법인세·유효세율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매출액규모와 소득금액·총부담세액·유효세율과의 관계

	매출액小	매출액大	T 통계량(p)값	유의수준
소득금액	40,791천원	298,047천원	-3.36	0.002
총부담세액	6,984천원	90,282천원	-3.49	0.001
유효세율	0.1728	0.2526	-3.45	0.001

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주도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소득금액·총부담세액·유효법인세율이 높으며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중소기업의 경우 규모 즉 매출액, 자본금이 큰 기업이 총부담세액이 많고 또한 유효세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준비금 또는 특별상각의 계상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무당국이나 금융기관의 성실도 또는 신용평가시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는 서면신고기준 등 일정한 고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세무간섭이 가급적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소득금액 이상을 계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준비금 또는 특별상각을 계상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설2에 대한 검증

가설2는 규모는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다. 위의 (표 5), (표 6)의 결과에 따르면 자본금 규모와 유효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출액 규모별 평균부담율의 변동도 자본금의 경우와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이 높은 실질 법인세부담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자본금이 매출액과 함께 유효세율의 적절한 대리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 법인세율체계는 2단계 초과누진 세율로 과세표준이 8,000만원까지는 20%, 8,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30%로 구성되어 있어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이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질부담법인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실질부담법인세율인 유효세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가설3에 대한 검증

(1) 소득금액과 총부담세액·유효세율과의 관계

세율체계가 2단계초과누진적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이 많은 법인이 많은 세금을 내게되므로 소득이 많은 법인이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90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이 8,000만원이하의 기업과 3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이 8,000만원 초과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두개의 집단을 다시 소득금액이 높은 대규모기업과 소득금액이 낮은 소규모 기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소득금액 8,000만원 이하 법인

	소 규 모	대 규 모	계
제 조 업	5	4	9
건 설 업	8	7	15
운 수 업	15	14	29
도 매 업	6	6	12
계	34	31	45

소득금액 8,000만원 초과 법인

	소 규 모	대 규 모	계
제 조 업	5	4	9
건 설 업	8	8	16
운 수 업	2	1	3
도 매 업	2	2	4
계	17	15	32

(표 8) 소득금액 8,000만원 이하 법인의 유효법인세율

	소규모법인	대규모법인	T통계량(p값)	유의수준
제 조 업	0.1734	0.1873	0.06	0.533
건 설 업	0.1830	0.1704	0.48	0.642
운 수 업	0.1714	0.1703	0.07	0.948
도 매 업	0.1948	0.1980	-0.48	0.641
전 체	1.1818	0.1744	0.73	0.468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소득금액 8,000만원 초과법인의 유효법인세율

	소규모법인	대규모법인	T통계량(p값)	유의수준
제조업	0.2336	0.2385	-0.05	0.960
건설업	0.4823	0.2765	0.92	0.390
운수업	0.2805	0.2810	-	-
도매업	0.2175	0.2705	-2.34	0.145
전체	0.3205	0.3051	0.13	0.897

(표 7)과 (표 8)에서 소득금액 크기의 대소에 따라서 업종별 유효법인세율 평균을 살펴보면 소득금액이 8,000만원 이하 법인의 경우 건설업과 운수업, 8,000만원 초과 기업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소득수준이 증가할 수록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저소득 납세자에 비해서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법인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많을 것이라고 가정되었으나, 분석결과는 기대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세제지원제도의 내용은 다양하며, 그 지원의 폭도 비교적 넓은 편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들이 전반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세법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행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기장에 의한 실사가 전제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계정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러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들의 법인세 부담액을 파악하고 법인의 규모와 법인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실질부담법인세율인 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모가 적은 기업보다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 법인세부담에 있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절세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유효세율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소규모 법인과 대규모 법인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모가 적은 기업에 비해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제주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중소기업인 경우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유효법인세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주장할 수 있다.

현행 조세지원정책은 정상적으로 상당한 과세소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지원 효과가 있으며, 제주지역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리고 서면신고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세무 간섭이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소득금액 이상을 계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그리고 준비금·특별상각제도를 활용 못하는 이유로 조세지원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에 의한 절세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각종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계획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절세효과를 고려하고, 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관리자는 절세효과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차별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대기업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감면요건의 완화 및 세무신고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세금부담 경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직접감면 위주의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에게 세제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주지역 중소기업중 1990년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97개 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지역과 분석기간을 확장하여 규모와 조세지원제도가 유효법인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부록)

업종	자본금	매출액	소득금액	법인세액	유효세율	
제조업	M-1	300,000천원	3,017,418천원	56,137천원	11,227천원	0.200
	M-2	50,000	730,225	44,694	7,388	0.165
	M-3	50,000	0	1,075	215	0.200
	M-4	100,000	4,109,818	47,171	8,684	0.184
	M-5	440,400	4,265,352	143,599	35,079	0.244
	M-6	200,000	4,926,079	181,676	46,503	0.256
	M-7	100,000	1,854,085	54,552	9,020	0.165
	M-8	200,000	3,093,037	169,316	26,154	0.154
	M-9	180,000	4,244,666	206,030	51,469	0.250
	M-10	150,000	2,981,449	92,188	11,712	0.127
	M-11	490,000	4,463,370	480,658	81,303	0.169
	M-12	855,000	6,277,181	99,975	7,395	0.074
	M-13	400,000	1,186,302	37,429	7,486	0.200
	M-14	300,000	2,737,615	59,499	11,900	0.200
	M-15	270,000	7,087,913	373,024	103,907	0.279
	M-16	130,000	1,121,417	81,759	46,503	0.569
	M-17	200,000	3,180,357	21,121	4,224	0.200
	M-18	300,000	2,967,411	46,820	4,795	0.102
건설업	C-1	400,000	5,788,978	240,883	64,265	0.267
	C-2	110,000	1,705,491	17,118	1,089	0.064
	C-3	500,000	5,571,901	399,758	90,327	0.226
	C-4	200,000	1,050,736	48,324	6,065	0.126
	C-5	110,000	911,085	17,079	3,416	0.200
	C-6	720,000	896,064	35,906	7,181	0.200
	C-7	60,000	1,284,591	27,711	5,542	0.200
	C-8	340,000	4,929,846	130,852	31,255	0.239
	C-9	1,500,000	9,739,058	384,659	107,397	0.280
	C-10	100,000	2,412,706	193,936	50,181	0.259
	C-11	150,000	1,197,593	24,708	4,942	0.200
	C-12	250,000	2,773,255	21,180	4,236	0.200
	C-13	350,000	359,619	15,422	3,084	0.200
	C-14	2,457,000	47,781,296	2,956,583	878,975	0.297
	C-15	100,000	3,490,740	163,790	10,368	0.063
	C-16	410,000	1,277,188	100,277	673	0.007
	C-17	115,000	443,458	8,507	1,701	0.200
	C-18	780,000	15,252,786	353,177	97,953	0.277
	C-19	100,000	285,757	16,192	3,238	0.200
	C-20	1,650,000	26,749,686	1,162,380	340,714	0.295
	C-21	2,650,000	24,019,999	2,186,129	645,438	0.295
	C-22	2,650,000	7,330,449	238,629	63,589	0.266
	C-23	1,500,000	7,751,000	240,901	199,191	0.827
	C-24	2,200,000	9,532,797	487,910	138,373	0.284
	C-25	400,000	2,622,646	207,695	400,000	1.926
	C-26	150,000	1,323,511	79,760	15,952	0.200
	C-27	200,000	4,376,308	357,611	92,135	0.258
	C-28	550,000	2,051,602	71,411	14,282	0.200
	C-29	200,000	935,887	43,601	2,884	0.067
	C-30	70,000	1,476,979	36,231	7,246	0.200
	C-31	200,000	1,434,261	50,100	10,020	0.200

地域發展研究 4輯

업종	자본금	매출액	소득금액	법인세액	유효세율	
운수업	T-1	199,500천원	1,946,508천원	426,264천원	119,879천원	0.281
	T-2	50,000	163,798	3,412	250	0.073
	T-3	110,000	1,884,282	392,778	109,833	0.280
	T-4	200,000	2,668,253	39,043	5,408	0.139
	T-5	120,000	753,054	45,154	6,871	0.152
	T-6	100,000	452,807	26,898	4,059	0.151
	T-7	300,000	1,176,068	67,116	13,423	0.200
	T-8	240,000	1,806,977	25,199	5,040	0.200
	T-9	220,000	1,307,692	66,287	12,617	0.190
	T-10	150,000	524,893	56,507	9,651	0.171
	T-11	272,000	1,202,635	66,563	13,312	0.200
	T-12	224,000	680,792	39,987	3,965	0.099
	T-13	528,750	1,530,211	19,538	3,907	0.200
	T-14	120,000	485,614	32,835	4,407	0.134
	T-15	50,100	137,326	3,931	59	0.015
	T-16	144,000	706,281	48,607	6,913	0.142
	T-17	100,000	924,906	64,907	12,981	0.200
	T-18	100,000	921,770	62,225	11,365	0.183
	T-19	51,000	518,974	29,934	5,987	0.200
	T-20	73,000	595,468	32,192	6,363	0.198
	T-21	50,500	167,667	6,096	1,219	0.200
	T-22	187,100	2,925,731	37,682	7,536	0.200
	T-23	582,000	1,256,609	39,882	7,976	0.200
	T-24	50,000	699,548	10,082	2,016	0.200
	T-25	470,000	2,164,606	422,850	118,855	0.281
	T-26	400,000	1,539,534	34,863	6,972	0.200
	T-27	50,000	519,287	13,117	2,623	0.200
	T-28	97,548	1,344,015	28,037	5,607	0.200
	T-29	132,000	1,418,589	69,504	13,901	0.200
	T-30	84,000	675,905	47,547	8,132	0.171
	T-31	144,900	584,240	38,165	5,230	0.137
	T-32	480,040	1,513,152	21,742	4,348	0.200
도매업	W-1	75,000	2,771,728	77,086	15,417	0.200
	W-2	75,000	2,676,509	72,437	14,487	0.200
	W-3	50,000	1,482,224	18,007	3,499	0.194
	W-4	77,000	2,053,205	80,976	16,293	0.201
	W-5	100,000	3,066,482	62,967	10,793	0.171
	W-6	75,000	1,451,432	17,372	2,994	0.172
	W-7	100,000	3,678,687	42,009	8,402	0.200
	W-8	75,000	1,779,204	23,518	4,703	0.200
	W-9	150,000	5,643,370	162,356	38,007	0.234
	W-10	75,000	526,398	2,015	403	0.200
	W-11	100,000	4,075,691	176,995	45,098	0.255
	W-12	150,000	1,355,460	76,644	15,329	0.217
	W-13	1,000,000	889,759	31,309	6,262	0.200
	W-14	142,000	25,261,113	581,783	166,535	0.286
	W-15	50,000	1,603,928	29,856	5,971	0.200
	W-16	50,000	515,191	22,220	4,444	0.200

참 고 문 헌

- 김정수, "중소기업의 세제·세정이용 및 익로실태분석" 조세, 통권58호, 1993. pp. 127-138.
- 이만우, "법인세법상 각종 세제혜택의 재무적 측정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제21권 제1호, 1991. pp. 271-294.
- 전태영, "조세회피 관련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제21권 제2호, 1992. pp. 165-189.
- 조성표, "우리나라 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제10호, 1990. pp. 177-203.
- Zimmerman, J. 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3. pp. 119-149.
- Shiin-Wu Wang,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s : A Test of Firm's Political Success" The Accounting Review Vol 66. No. 1, 1991, pp. 158-169.
- 신찬수, 최신세무회계, 1993, 세학사.
- 신찬수·김재억, 세무관리론, 1988, 조세통람사.